

의안번호	2212344
의 퇴 인	김대식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B4542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[illegible]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															
1	안 제6조 (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															
2	안 제11조의2 (지하안전통합심의위 원회)	(미대상)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내 운영중인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미발생할 것으로 예상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구성</th><th>자문위원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<td>제1기 자문단('18년 ~ '20년)</td><td>15명</td></tr> <tr> <td>2</td><td>제2기 자문단('20년 ~ '22년)</td><td>15명</td></tr> <tr> <td>3</td><td>제3기 자문단('22년 ~ '24년)</td><td>15명</td></tr> <tr> <td>4</td><td>제4기 자문단('24년 ~ '26년)</td><td>18명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구성	자문위원	1	제1기 자문단('18년 ~ '20년)	15명	2	제2기 자문단('20년 ~ '22년)	15명	3	제3기 자문단('22년 ~ '24년)	15명	4	제4기 자문단('24년 ~ '26년)	18명
구분	구성	자문위원															
1	제1기 자문단('18년 ~ '20년)	15명															
2	제2기 자문단('20년 ~ '22년)	15명															
3	제3기 자문단('22년 ~ '24년)	15명															
4	제4기 자문단('24년 ~ '26년)	18명															
3	안 제46조 (사고조사 등)	(미대상)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지방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실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성·운영되는 위원회로, 개정안은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·지방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사고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이며, 기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가능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														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‘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,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,¹⁾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시·도 관리계획²⁾을 수립하며, 시장·

1) 제6조(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)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집행계획(이하 "집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2) 제7조(시·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
① 시·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"시·도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 관리계획을 수립(변경

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 관리계획³⁾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이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, 교육 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시·도, 시·군·구의 기관별 수요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○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각 기관별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, 교육 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획이 수립될 사항으로, 이는 국가, 시·도, 시·군·구의 기술개발 등 관련 기본계획, 집행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과 추진방식에 따라 관련 내용과 소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

－ 다만,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5조⁴⁾ 및 시행규칙 제5조⁵⁾에서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등의 자격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다음과 같이 관련 교육이 시행된 바 있어 참고할 수 있음
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3) 제8조(시·군·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·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"시·군·구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군·구 관리계획을 수립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4) 제15조(책임기술자의 자격 등)

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(이하 "책임기술자"라 한다)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토질·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.

② 책임기술자는 지하안전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지하안전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
5)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

제5조(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)

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.

1.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
2.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

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)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[표 1] 지하안전분야 교육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국토안전관리원	건설기술교육원	(재)건설산업교육원
2020	26	877	305
2021	53	922	947
2022	10	483	657
2023	77	569	502
2024	100	660	718

자료: 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- 또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 중인 “건설 전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(’26~’30)’ 사업이 확정될 경우 ‘스마트 지하안전관리 기술개발’에 ‘26년 10억원, ’27년 25억원, ’28년 25억원, ’29년 2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